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3년 1월 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줄었으나,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및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및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0.8%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었으나, 통신·방송장비,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3.2%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3.2%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함(전년동월대비 5.9% 증가).

◆ 2023년 1월 소비는 전월대비 2.1%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4%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9%), 의복 등 준내구재(-5.0%),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2.1% 감소함(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15.9%)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9%)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1.4% 감소함(전년동월대비 3.9%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1.8%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53.3%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0	2021	2022p	2021				2022				2022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p	1월	12월p	1월p
생산	전산업	-1.1	4.9	4.5	1.7	0.6	0.9	1.5	1.3	0.9	0.4	-1.5	0.5	0.0(0.7)	0.5(-0.8)
	광공업	-0.3	7.4	1.4	3.7	-0.6	1.0	1.1	3.8	-1.6	-1.5	-6.4	0.7	-3.1(-10.5)	2.9(-12.7)
	제조업	-0.2	7.6	1.4	3.9	-0.7	0.9	1.3	3.9	-1.7	-1.8	-6.7	0.5	-3.6(-11.1)	3.2(-13.2)
	건설업	-2.1	-6.7	2.7	-5.2	-1.9	-1.1	4.1	-1.9	1.4	0.4	4.6	-0.3	-0.7(0.5)	1.8(0.9)
	서비스업	-2.0	4.4	6.8	0.6	1.7	1.1	1.5	0.0	2.8	1.5	0.2	0.7	1.5(6.7)	0.1(5.9)
소비	소비재 판매	-0.2	5.9	-0.4	1.7	2.2	0.8	1.1	-1.1	-1.1	1.2	-0.9	-2.6	-0.2(-3.1)	-2.1(0.7)
투자	설비투자	5.9	9.6	3.3	6.0	0.7	-0.8	-0.2	0.2	-1.2	9.8	-0.2	0.5	-6.1(3.2)	-1.4(-3.9)
물가		0.5	2.5	5.1	1.3	0.5	0.7	1.0	1.5	2.1	1.1	0.4	0.6	0.8(5.2)	0.3(4.8)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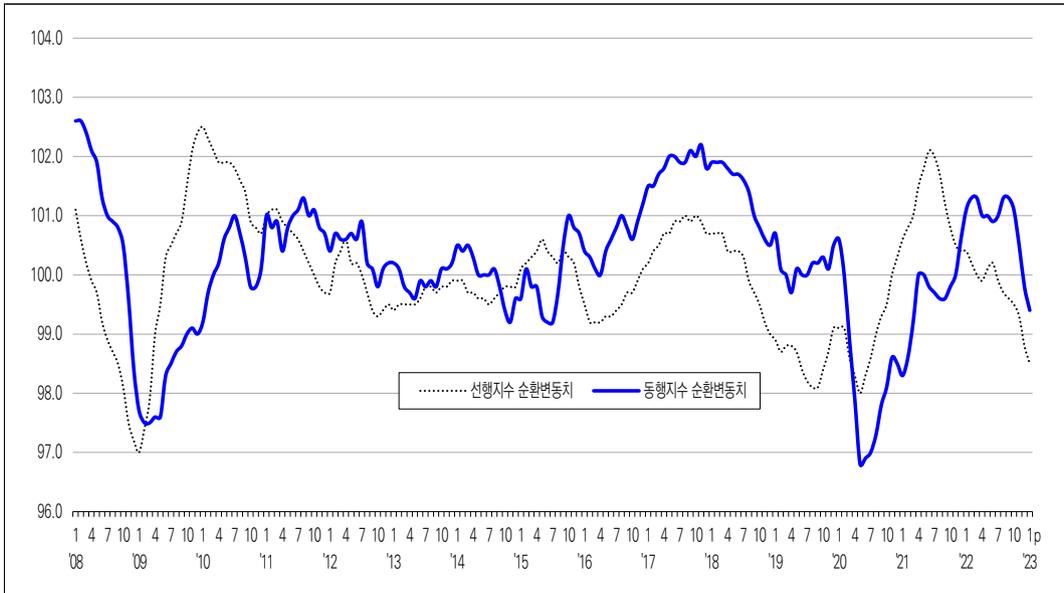
◆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상승)

-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100)로 전월대비 0.3% 상승함(전년동월대비 4.8%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0.5%), 음식·숙박(0.6%), 식료품·비주류음료(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0.8%), 교육(0.2%), 기타 상품·서비스(0.2%), 보건(0.1%), 오락·문화(0.2%), 의류·신발(0.1%), 주류·담배(0.2%)는 상승, 통신은 변동 없으며, 교통(-0.7%)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6%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대비 0.4% 상승함.

◆ 2023년 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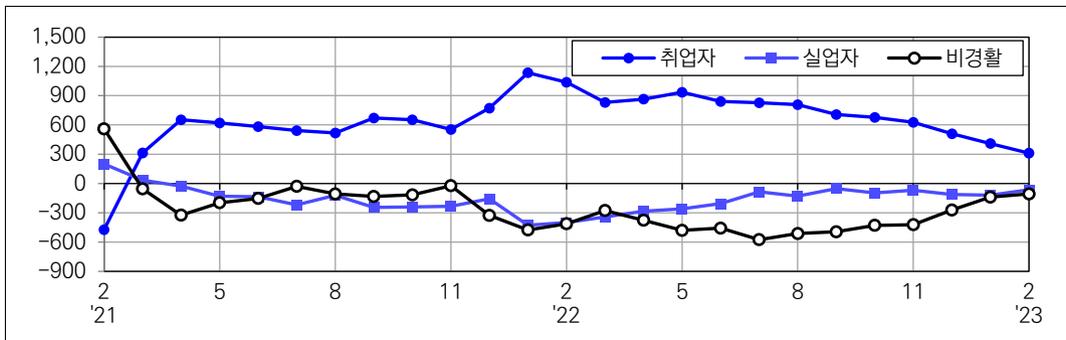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

○ 2023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1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27만 7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2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됨. 서비스업 취업자는 음식숙박, 정보통신,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2월은 2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50대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20대는 음식숙박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50대는 사업지원, 공공행정, 교육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2월은 상용직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은 감소폭이 확대됨. 반면 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됨. 상용직은 정보통신 및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은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일시휴직자) 2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 5천 명 감소하여 감소로 전환(1월 +6만 8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3만 명 감소함.
- (실업자) 2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4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1월 -11만 9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9만 9천 명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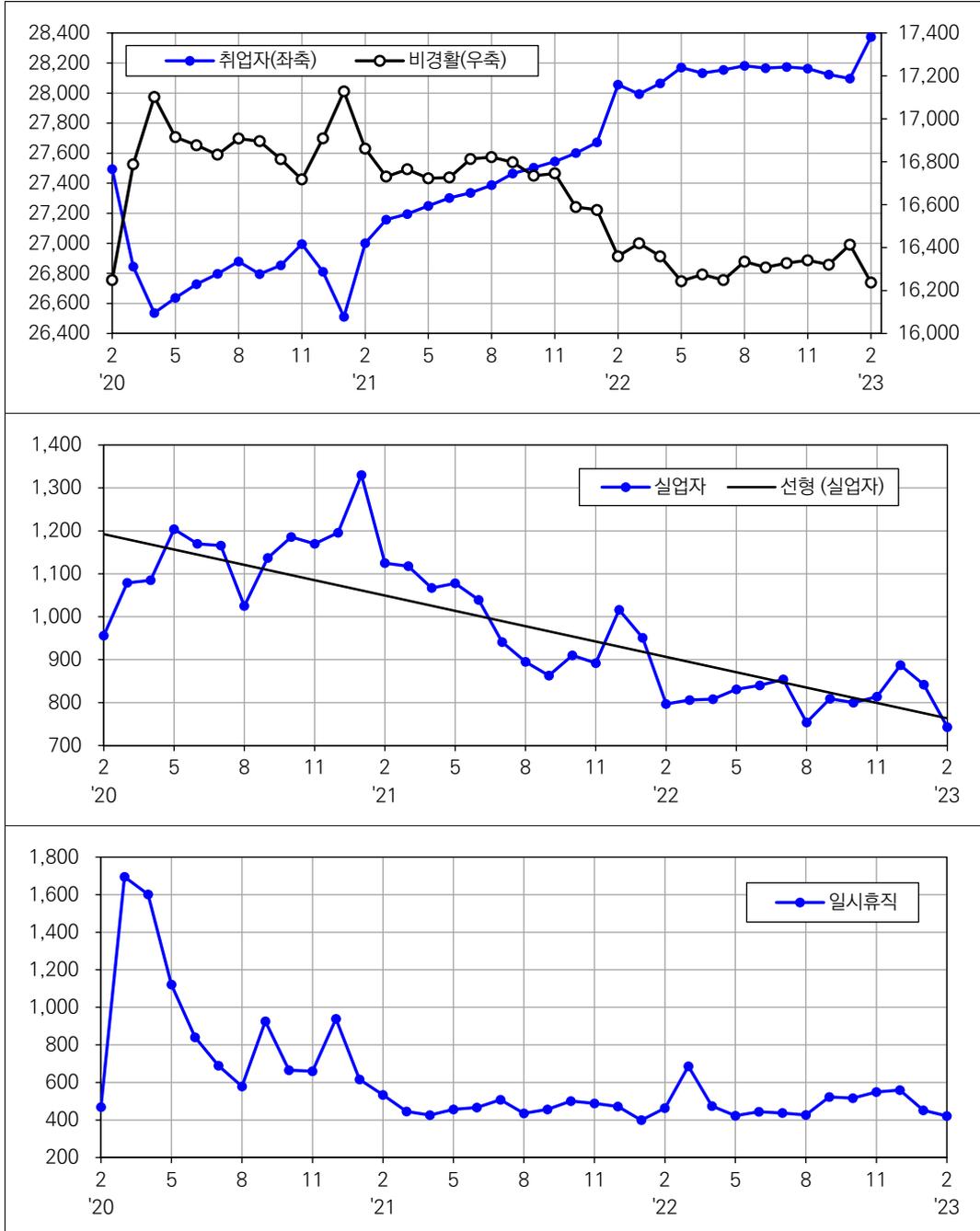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50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20대 취업자는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음식숙박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50대는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사업지원, 공공행정, 교육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60세 이상은 건설업에서 증가로 전환되고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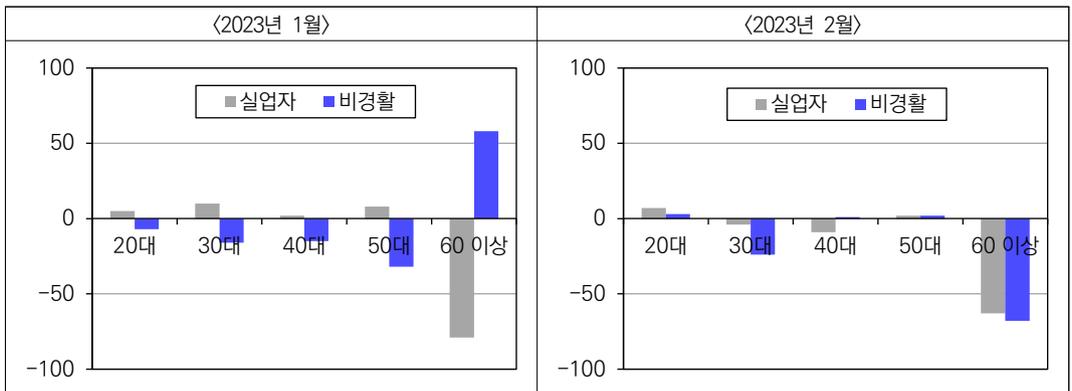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취업자	-4	-8	-31	(-19)	-21	-43	-94	(-31)	42	17	24	(23)
실업자	-3	-6	-9	(-2)	-21	0	5	(7)	-19	0	6	(-4)
비경황	-27	9	40	(21)	-135	-142	-101	(3)	-129	-123	-130	(-24)
실업률	-1.6	-2.0	-2.6	(-0.6)	-0.5	0.1	0.3	(0.2)	-0.3	0.0	0.1	(-0.1)
고용률	-0.1	-0.3	-1.3	(-0.8)	1.3	1.0	0.3	(-0.3)	1.8	1.5	1.5	(0.4)
	40대				50대				60세 이상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취업자	-57	-63	-77	(-2)	110	107	77	(-6)	440	400	413	(171)
실업자	-5	-9	-5	(-9)	-22	-15	3	(2)	-44	-91	-64	(-63)
비경황	-38	-28	-23	(1)	-75	-75	-68	(2)	133	221	176	(-68)
실업률	0.0	-0.1	0.0	(-0.1)	-0.4	-0.3	0.0	(0.0)	-1.2	-2.0	-1.3	(-1.0)
고용률	0.2	0.2	0.0	(0.1)	1.2	1.1	0.8	(-0.1)	1.7	1.5	1.5	(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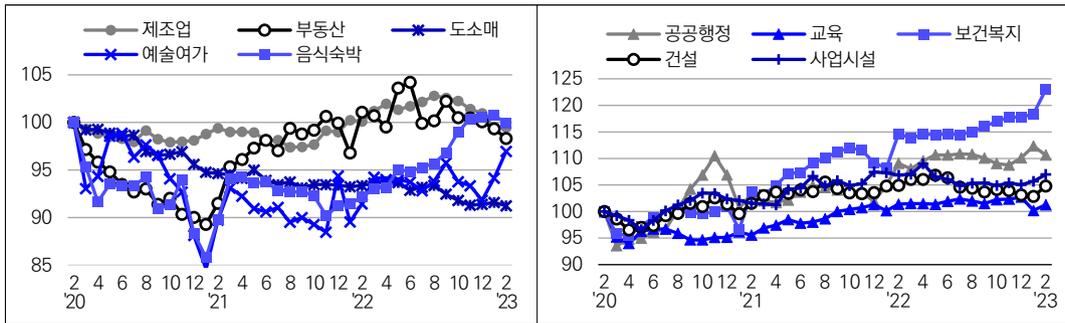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부동산, 도소매, 음식숙박 및 공공행정이 감소함. 반면 제조업은 정체됨. 예술여가, 교육, 보건복지, 건설 및 사업시설은 증가함.
-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및 예술여가는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기록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4	-47	-44	-7	30	-30	-6	-0.4
광업	-5	-6	-6	-1	1	0	0	-1.5
제조업	86	-35	-27	-20	-67	1	-86	-1.9
전기·가스·증기	9	8	13	2	1	4	7	8.2
수도·원료재생	-28	-31	-28	3	-5	7	5	3.1
건설업	-12	-39	-4	-16	-5	39	18	0.8
도매 및 소매업	-73	-61	-76	4	7	-13	-2	-0.1
운수 및 창고업	-14	-51	-44	-4	-33	28	-9	-0.5
숙박 및 음식점업	216	214	176	5	4	-20	-11	-0.5
정보통신업	50	72	43	-12	31	2	21	2.2
금융 및 보험업	-20	16	-6	8	29	-14	23	3.0
부동산업	1	14	-15	-2	-4	-6	-12	-2.1
전문·과학·기술	45	30	39	20	-9	6	17	1.3
사업시설관리지원	-32	-21	1	-5	9	17	22	1.5
공공행정·사회보장	84	71	18	15	25	-19	21	1.7
교육서비스업	26	1	-3	7	-47	20	-20	-1.1
보건 및 사회복지	184	220	192	-1	15	109	123	4.4
예술·스포츠·여가	-13	23	28	-8	12	15	19	3.9
협회·단체·수리·기타	14	16	34	-4	-8	14	2	0.1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3	10	16	6	3	2	11	13.2
국제 및 외국기관	4	4	4	0	1	0	1	6.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3년 2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은 감소폭이 확대됨. 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됨.

- 상용직은 건설업, 정보통신 및 공공행정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임시직은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공공행정에서는 감소로 전환됨. 반면 임시직은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사업관리지원에서 증가로 전환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636	575	470	34	41	9	84	0.5
임시직	-23	-52	-128	-43	-125	252	85	1.8
일용직	-76	-70	-8	-12	-31	63	21	1.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6	54	55	21	18	-6	33	2.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7	-25	-5	-60	-42	31	-71	-1.6
무급가족종사자	-81	-72	-72	-31	-11	-3	-45	-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농림어업	5	3	1	-18	-18	-15	-6	-11	-15	-10	-14	-13	29	10	14
제조업	102	10	7	10	-7	-20	-23	-24	-16	11	13	21	-2	-11	-10
건설업	63	64	42	5	-26	-8	-68	-62	-18	-1	-6	-13	5	-2	3
도소매	15	16	15	-22	-46	-40	2	9	-4	-6	-9	-13	-24	-9	-12
운수창고	-21	-33	-15	-19	-19	-26	11	5	3	4	8	10	10	-13	-16
음식숙박	121	112	102	73	77	39	9	9	19	8	28	36	5	-6	-13
정보통신	55	65	36	-10	-5	-9	-4	-2	-1	-2	0	2	9	14	15
금융보험	-14	3	-4	-16	-1	-13	0	-1	0	4	6	5	6	9	6
부동산	-20	-1	-15	15	13	11	-1	1	-1	1	5	0	5	-3	-9
전문과학기술	30	18	13	-5	-9	-4	4	4	8	9	11	17	8	8	6
사업관리지원	-36	-27	-24	-4	-10	-12	-9	-1	22	8	15	12	9	6	7
공공행정	88	64	48	-2	9	-31	-2	-3	0	-	-	-	-	-	-
교육서비스	23	25	17	-8	-20	-19	10	1	1	3	-6	-6	3	10	11
보건복지	209	219	202	-26	0	-2	0	-3	-13	-4	0	-1	6	5	7
예술스포츠	-8	7	4	4	11	18	1	11	10	9	11	8	-20	-19	-14
협회단체	39	45	48	-4	-1	-2	1	-6	-10	-4	-4	-8	-22	-23	0
가구 내 고용	-3	1	1	8	5	7	-2	4	7	-	-	-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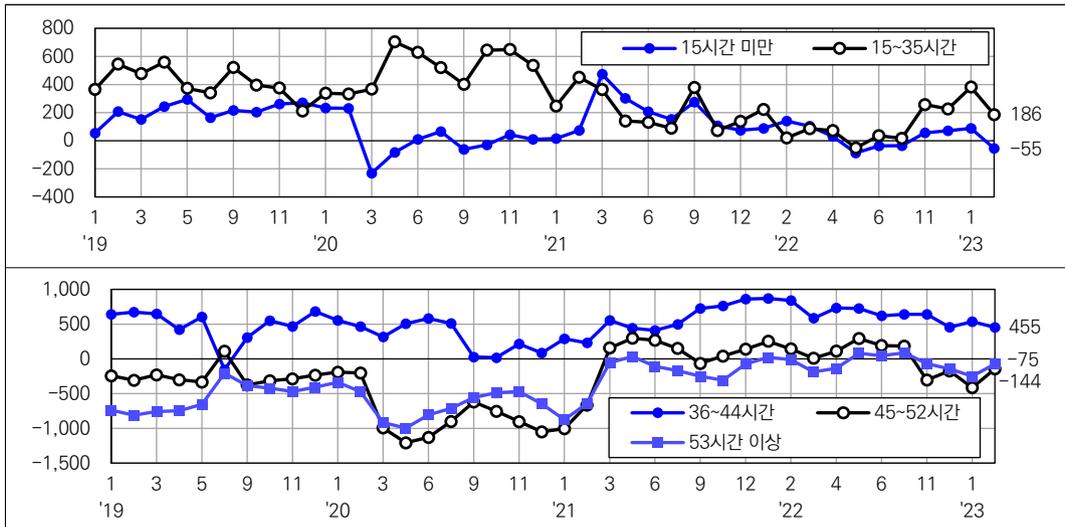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2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8.7시간으로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함.

－ 15-44시간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15시간 미만 및 45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감소함.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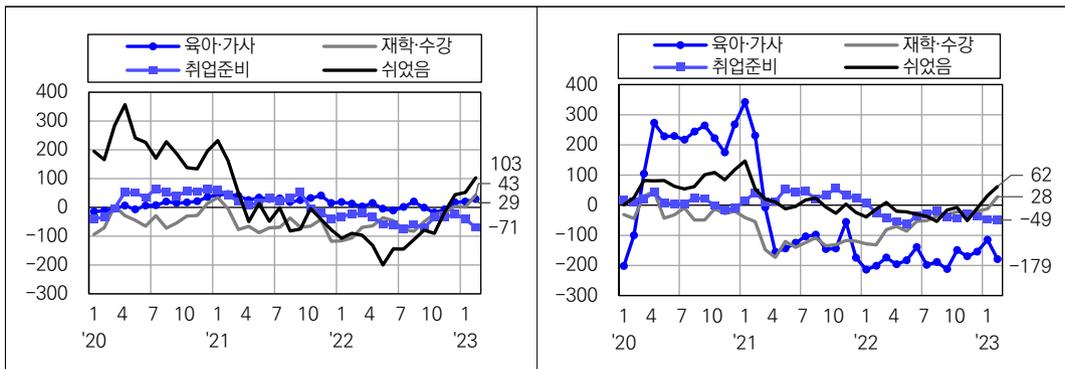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1월 -13만 9천)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8만 6천 명으로 쉬었음 및 재학·수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여성은 -19만 2천 명으로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육아·가사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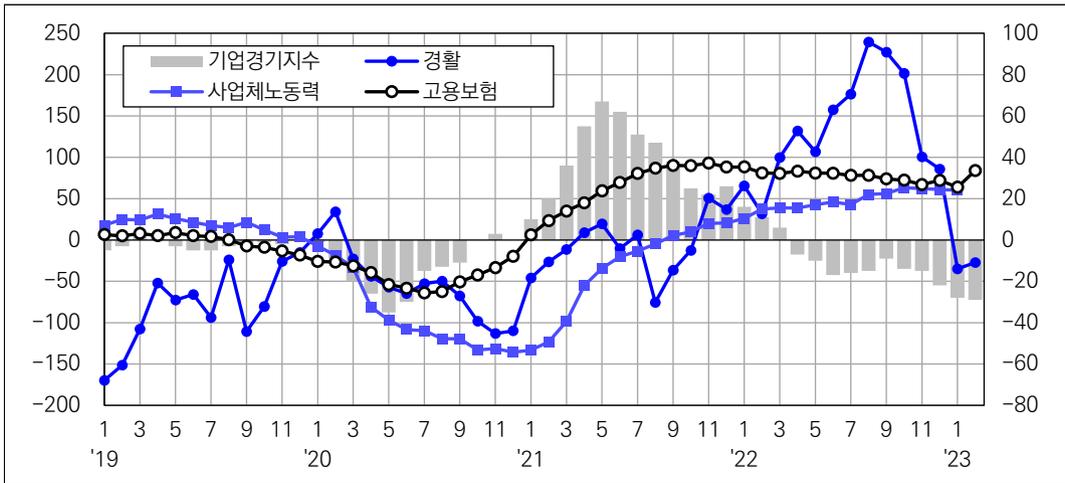
◆ 제조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을 유지한 반면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 2023년 2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을 유지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피보험자는 주로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1천 명 증가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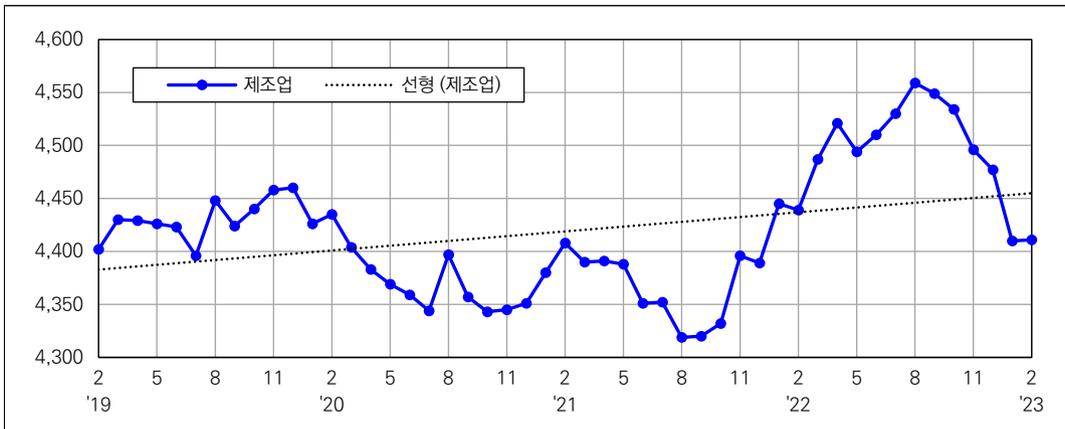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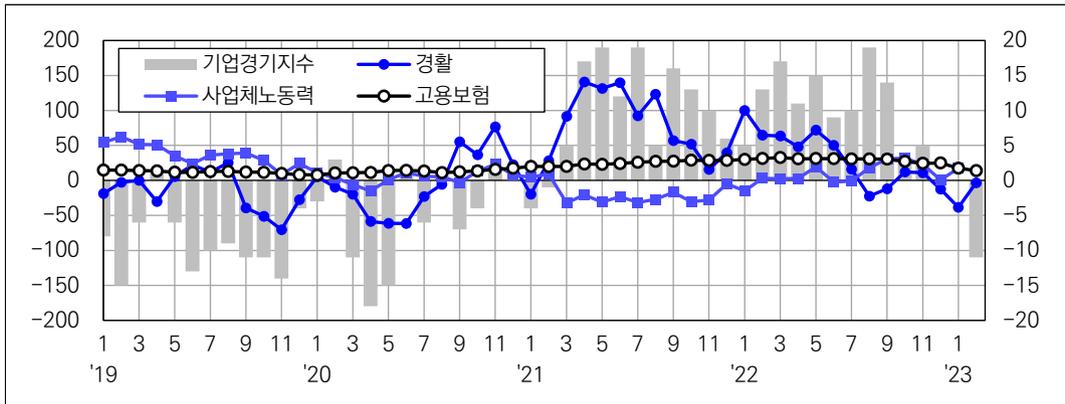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2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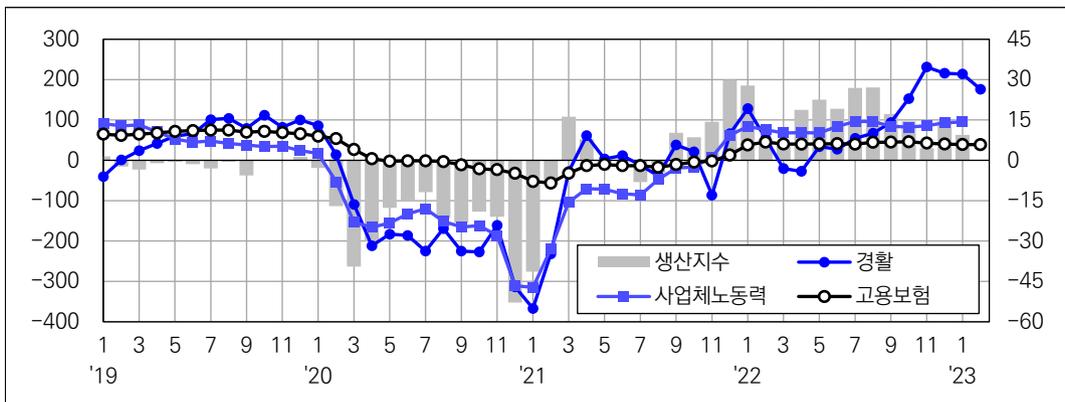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2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38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숙박음식)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그 외 지표는 증가폭을 유지함.
 - (정보통신) 모든 고용 지표에서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가 이어짐.
 - (공공행정) 전년도 기저의 영향으로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보건복지) 경찰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된 반면 그 외 고용 지표는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10]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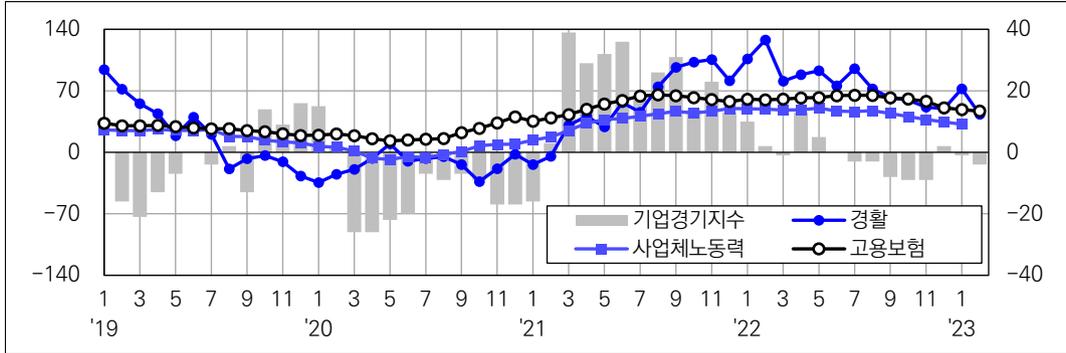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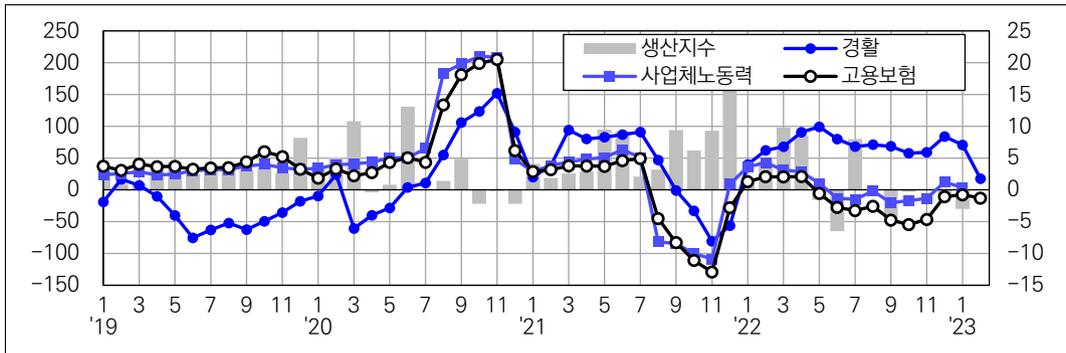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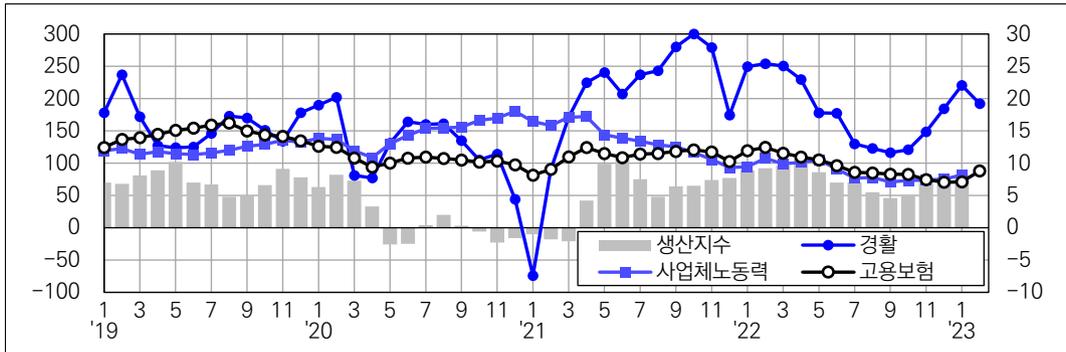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산업생산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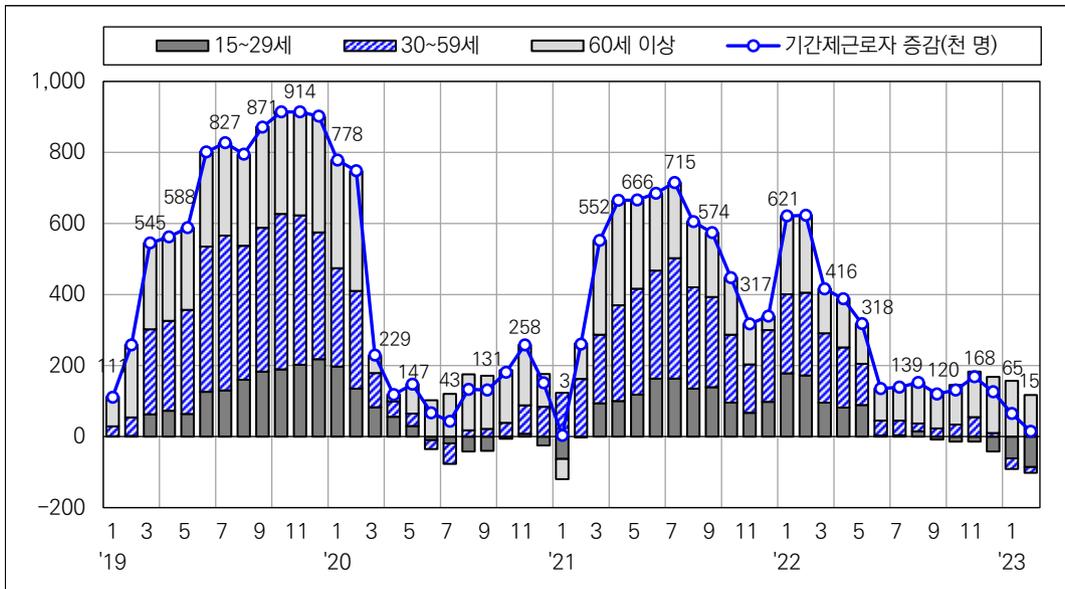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3년 2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기간제는 연령별로 15~29세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2년 1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2022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43만 4천 원(3.0%)임.
 - 2022년 1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71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179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데는 특별급여가 감소로 전환한 데 기인함. 상용 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15.1%), 건설업(-8.8%), 부동산업(-8.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4.1%) 등이었으며,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64.8%)의 특별급여 감소가 컸음.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큰 폭의 소비자물가상승률(5.0%)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함.

◆ 2022년 연평균 명목임금은 3,869천 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 실질임금은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전년대비 0.2% 감소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1 12월	2022 1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3,869 (4.9)	4,305 (7.5)	4,434 (3.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4,095 (5.2)	4,576 (7.8)	4,719 (3.1)
	정액급여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3,319 (4.3)	3,374 (4.0)	3,524 (4.5)
	초과급여	197 (3.7)	202 (2.7)	200 (-0.9)	208 (3.7)	220 (5.7)	210 (.3)	222 (5.9)
	특별급여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992 (25.0)	973 (-1.9)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1,747 (2.8)	1,753 (2.8)	1,799 (2.6)
소비자물가지수		104.5 (1.5)	105.1 (0.4)	105.7 (0.5)	104.0 (2.5)	109.3 (5.1)	104.0 (3.7)	109.3 (5.0)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0.2	3.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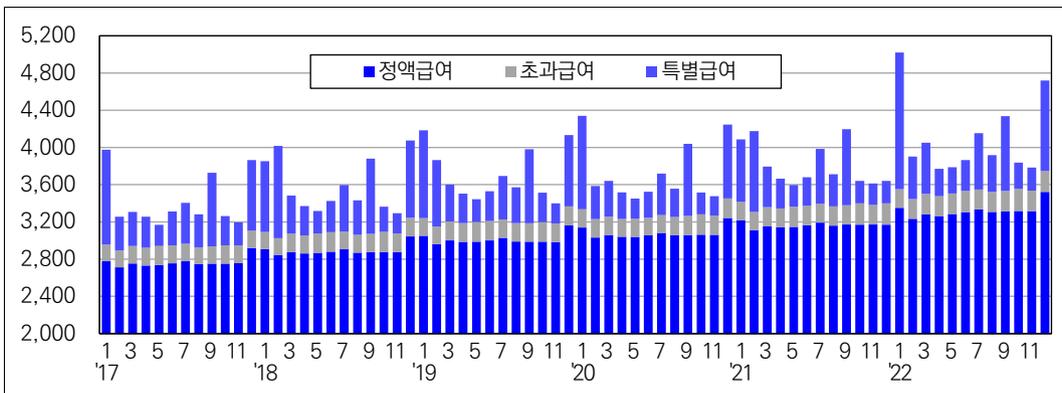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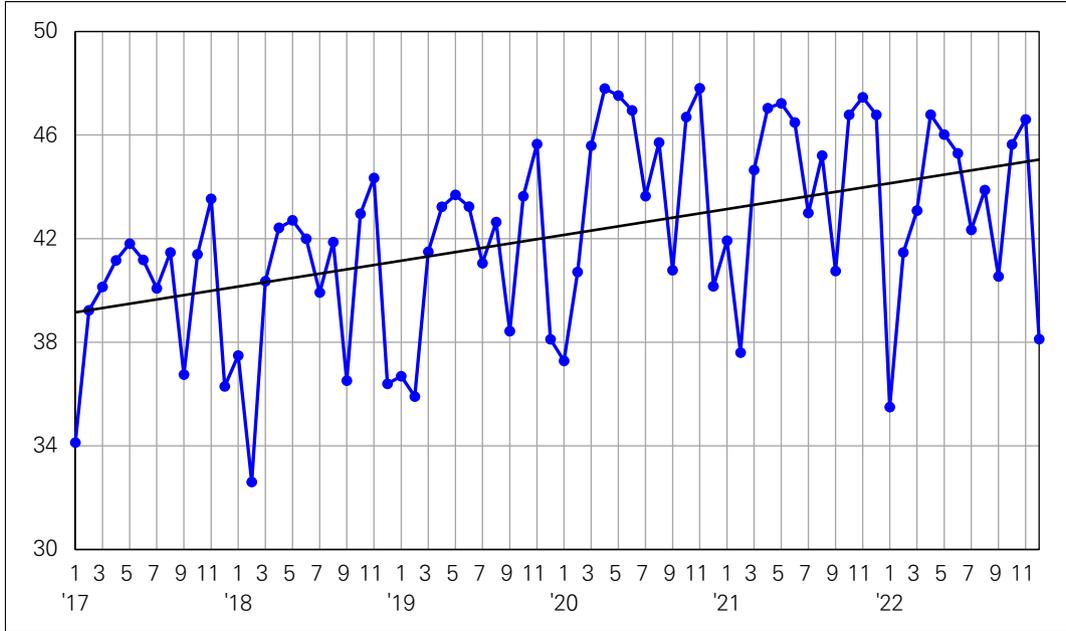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2월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2년 12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93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한 가운데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6,939천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5% 감소함.²⁾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감소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감소 영향에서 비롯됨.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특별급여는 2021년에 지급된 성과급으로 인한 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33.1%)하였으며,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7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 2022년 연간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대비 증가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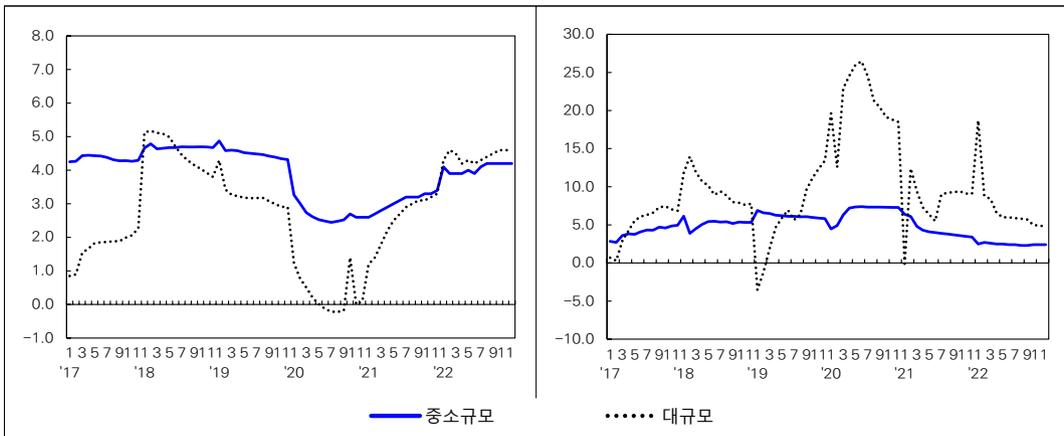
		2020	2021	2022	2021	2022
					12월	12월
중소 규모	소 계	3,193 (1.7)	3,316 (3.8)	3,462 (4.4)	3,734 (5.0)	3,930 (5.3)
	상용임금총액	3,377 (1.2)	3,510 (3.9)	3,675 (4.7)	3,979 (5.2)	4,200 (5.6)
	정액급여	2,915 (2.6)	3,012 (3.4)	3,139 (4.2)	3,158 (4.0)	3,296 (4.4)
	초과급여	171 (-2.4)	176 (2.9)	186 (5.7)	180 (-0.6)	190 (5.5)
	특별급여	292 (-9.4)	322 (10.4)	350 (8.7)	641 (13.6)	714 (11.4)
	임시일용임금총액	1,615 (7.3)	1,671 (3.4)	1,711 (2.4)	1,715 (2.1)	1,757 (2.4)
대규모	소 계	5,242 (-2.1)	5,582 (6.5)	5,922 (6.1)	7,194 (14.6)	6,939 (-3.5)
	상용임금총액	5,335 (-2.8)	5,687 (6.6)	6,049 (6.4)	7,364 (15.0)	7,100 (-3.6)
	정액급여	3,847 (0.1)	3,973 (3.3)	4,155 (4.6)	4,381 (4.3)	4,569 (4.3)
	초과급여	340 (1.4)	357 (5.1)	377 (5.5)	349 (2.4)	370 (6.1)
	특별급여	1,149 (-12.5)	1,357 (18.1)	1,516 (11.8)	2,634 (41.4)	2,161 (-18.0)
	임시일용임금총액	2,029 (18.5)	2,214 (9.1)	2,321 (4.8)	2,369 (9.1)	2,471 (4.3)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제조업(-0.7%)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2년 12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8.8%), 금융 및 보험업(8.2%), 광업(7.7%), 정보통신업(7.6%) 등으로 나타남. 반면 제조업은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12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30만 2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926만 8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56만 원) 순으로 나타남.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6만 원)으로 나타남.

◆ 2022년 연간 산업별 월평균 임금은 전산업에서 전년대비 증가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2	2021	2022
				12월	12월
전 산업	3,527	3,689 (4.6)	3,869 (4.9)	4,305 (7.5)	4,434 (3.0)
광업	4,325	4,415 (2.1)	4,608 (4.4)	4,571 (1.2)	4,922 (7.7)
제조업	3,990	4,239 (6.2)	4,484 (5.8)	5,271 (11.9)	5,236(-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 (0.3)	6,907 (2.3)	8,911(-4.3)	9,302 (4.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 (5.3)	4,168 (1.8)	5,278 (8.5)	5,329 (1.0)
건설업	3,032	3,106 (2.4)	3,229 (4.0)	3,327 (5.1)	3,419 (2.8)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 (3.7)	3,773 (6.3)	4,073 (4.4)	4,433 (8.8)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 (7.5)	4,040 (6.5)	4,978(21.1)	5,277 (6.0)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 (1.4)	2,004 (5.2)	2,007 (7.9)	2,060 (2.7)
정보통신업	4,613	4,796 (4.0)	4,999 (4.2)	5,293 (7.0)	5,694 (7.6)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 (6.7)	7,324 (5.2)	8,568 (4.7)	9,268 (8.2)
부동산업	2,848	2,954 (3.7)	3,086 (4.5)	3,295 (6.1)	3,359 (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 (4.8)	5,376 (5.3)	6,459 (8.1)	6,560 (1.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 (3.4)	2,584 (3.7)	2,702 (3.6)	2,811 (4.0)
교육서비스업	3,366	3,355(-0.3)	3,435 (2.4)	3,309(-0.1)	3,426 (3.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 (2.5)	3,122 (3.6)	3,165 (3.5)	3,256 (2.9)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 (4.2)	3,077 (2.8)	3,378 (1.9)	3,502 (3.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 (5.4)	2,832 (4.9)	2,882 (4.6)	3,037 (5.3)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8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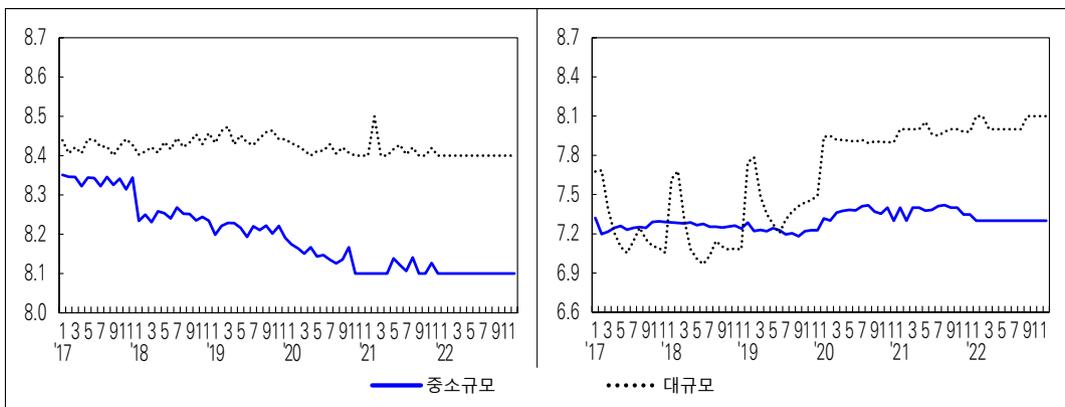
- 2022년 12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1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9.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7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에서 근로시간 감소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가 영향으로 보임.
- 사업체규모별 2022년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기업은 166.5시간으로 5.9시간 감소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체는 167.0시간으로 5.3시간 감소하였음.

◆ 2022년 연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전년대비 2.0시간 감소

-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의 감소는 연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2일 감소한 영향이 컸음.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일상회복에 따른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2022년 1월 5~29인 사업체) 등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2	2021 12월	2022 12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1.8)	160.3(0.1)	158.3(-1.2)	172.4(3.5)	166.5(-3.4)
	상용 총근로시간	167.6(-2.1)	167.8(0.1)	165.9(-1.1)	181.2(3.7)	175.0(-3.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1.7)	160.1(0.2)	158.2(-1.2)	173.6(4.1)	167.4(-3.6)
	상용 초과근로시간	7.8(-9.3)	7.7(-1.3)	7.7(0.0)	7.6(-6.2)	7.6(0.0)
	임시일용 근로시간	96.1(0.7)	97.4(1.4)	96.4(-1.0)	100.6(1.1)	98.0(-2.6)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0.8)	162.3(-0.3)	160.4(-1.2)	172.3(2.6)	167.0(-3.1)
	상용 총근로시간	163.9(-1.4)	163.4(-0.3)	161.7(-1.0)	173.7(2.7)	168.5(-3.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1.2)	152.3(-0.5)	150.6(-1.1)	163.3(3.2)	158.1(-3.2)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4.4)	11.1(1.8)	11.0(-0.9)	10.5(-3.7)	10.4(-1.0)
	임시일용 근로시간	125.2(19.4)	127.9(2.2)	125.0(-2.3)	130.2(2.0)	126.0(-3.2)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2년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83.3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광업(181.7시간), 제조업(180.2시간)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9.1시간)이었음.

◆ 2022년 연간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운수 및 창고업(0.2%)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대비 감소(연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2일 감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0	2021	2022	2021	2022
				12월	12월
전 산업	160.6	160.7(0.1)	158.7(-1.2)	172.4(3.4)	166.6(-3.4)
광업	181.2	179.9(-0.7)	174.8(-2.8)	192.2(-1.2)	181.7(-5.5)
제조업	172.7	173.5(0.5)	171.1(-1.4)	186.0(2.3)	180.2(-3.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58.6(-1.9)	169.4(-0.9)	166.4(-1.8)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0.2)	174.4(-1.4)	191.7(4.2)	183.3(-4.4)
건설업	136.9	135.9(-0.7)	134.3(-1.2)	145.5(3.3)	139.1(-4.4)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0.0)	162.3(-0.9)	175.8(3.1)	170.5(-3.0)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0.8)	160.6(0.2)	170.6(4.0)	168.9(-1.0)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46.5(-1.3)	156.9(6.2)	151.2(-3.6)
정보통신업	163.8	164.1(0.2)	162.7(-0.9)	176.6(4.4)	169.4(-4.1)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59.8(-1.3)	176.1(4.4)	169.0(-4.0)
부동산업	173.2	171.8(-0.8)	169.4(-1.4)	182.6(1.7)	177.7(-2.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60.3(-0.8)	174.0(4.7)	167.9(-3.5)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0.2)	159.8(-1.4)	173.9(3.0)	168.0(-3.4)
교육서비스업	136.6	137.2(0.4)	136.1(-0.8)	148.5(5.6)	144.1(-3.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55.3(-1.9)	170.9(2.8)	163.6(-4.3)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2.0)	150.8(-1.2)	161.0(8.8)	155.7(-3.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1.3)	160.3(-1.3)	175.6(4.4)	170.1(-3.1)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3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3건
 - － 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8건)보다 5건 적은 수치임.
- 2023년 2월 조정성립률 16.7%
 - － 2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0.0%보다 16.7%p 높은 수치임.

〈표 1〉 2022년, 2023년 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3. 2	3	7	1	1	0	5	5	0	1	0	3	16.7%
2022. 2	8	4	0	0	0	4	2	2	0	0	6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3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6건
 - － 2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건)보다 4건 많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1년, 2022년 2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3. 2	6	0	0	0	0	7
2022. 2	2	1	0	0	1	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3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40건
 - － 2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53건)보다 13건 적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6.6%(49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3.4%(85건)를 차지함.

〈표 3〉 2022년, 2023년 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2	140	134	40	9	47	8	10	20	442
2022. 2	153	106	33	4	44	3	15	7	48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3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6건
 - － 2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3건)보다 3건 많은 수치임.
 -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00.0%(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0.0%(0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2	6	1	1	0	0	0	0	0	13
2022. 2	3	6	3	0	2	1	0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이번 정부 안은 2022년 12월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방안을 토대로 마련됐고,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중 근로기준법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정부는 현재 1주일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했음. 현재는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12시간)까지로 노동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4주를 모두 한 단위로 통합해 ‘1개월에 208시간’의 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임.
-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과 ‘휴식 없이 주 64시간 상한’ 선택권을 제시했음.
-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전체 연장노동시간 허용치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음.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음.
- 연장노동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음.
-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로 늘리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까지 정산 기간을 확대함.

◆ 새로그침노동자협의회 ‘주 69시간’ 반대

- 3월 9일 ‘새로그침노동자협의회(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관한 의견문’을 내고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 협의회는 현행법상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없고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정부 정책은 최저 노동시간을 설정해 개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편방안은)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며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없어지고 생산성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정부안 보완 지시

-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다”고 하였음.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부연했고, “정부는 추후 엠제트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 연세의료원 노사, 주 4일제 연구사업 본격 착수

- 2월 21일 연세의료원 노사는 ‘주 4일제 시범사업 TF’ 킷오프미팅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이날 회의는 주 4일제 시행 후 연세의료원 안상훈 인재경영실장과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전문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표 인사 △1차 설문 사전보고 △TF 운영계획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음.
- TF는 회차별 세 차례 설문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참여자, 노사 관계자, 부서 관리자 인터뷰를 진행함. 시범사업 1년 동안 모니터링과 연구가 계속될 예정임.
-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2022년 임금협약을 마무리하면서 병원업계 최초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에서 3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함.

◆ 임금결정 영향력, 대기업이 노조의 7배

-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 '노동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음.
- 안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학력, 성별, 노동조합, 비정규직, 숙련 등 10개 변수를 표준화해서 볼 때 300인 이상 대기업은 표준화계수가 0.1933으로, 노동조합의 0.0273에 비해 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 불평등이 노조보단 기업 규모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밝혔음.
- 대기업의 영향력이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결과도 제시됐음. 대기업이 임금 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2003년 0.0539에서 2022년 0.0680으로 늘었음. 안 교수는 “대기업이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완만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음.
- 반면, 노동조합은 최근 5년간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음. 안 교수는 “앞선 연구를 볼 때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노조는 임금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엔 완화 또는 심화를 오갔다”고 짚었음. 이어 “2018~2022년까지는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모습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며 “이는 소득 중상층(3~6분위)의 노조 조직률 증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직장인 30% “남은 연차도 못 써”

- 3월 12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쓸 수 없다’는 응답이 30.1%였음.
-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6.0%인 데 반해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7.0%,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36.8%, 5인 미만 기업은 49.4%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2022년 한 해 동안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휴가 관련 제보는 229건이었음.
- 이 가운데 연차휴가 제한이 96건(41.9%)으로 가장 많았음. 뒤이어 병가 제한(67건 · 29.3%), 연차휴가 위법 부여(43건 · 18.8%), 연차수당 미지급(30건 · 13.1%) 순이었음.

◆ 삼성웰스토리 노사 2023년 임금협약 체결

- 3월 10일 삼성웰스토리 노사는 2023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었음.
- 노사는 2022년 12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8일까지 8차례 교섭을 진행했음.
- 8차 교섭에서 노사는 직급(CL1~CL4)에 따라 임금총액 2~4% 인상, 식대보조비 6만 원 인상,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전 직급 1만 원 정액인상, 명절·대체공휴일 근무 격려금 1만 원(4시간 근무마다) 지급 등에 합의했음.
- 삼성웰스토리 노사는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 다만 법에서 보장하는 것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무급 처리하기로 함.
- 배우자 조의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음.

◆ 웹툰작가 17% “극단선택 떠올러”

- 3월 7일 이수진·류호정 의원실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여성노동조합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웹툰작가노동조합서울은 ‘웹툰작가들의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과 불안전 노동 수준 실태조사’ 발표회에서 웹툰작가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주당 평균 51시간씩 고강도·장시간 노동을 하고 10명 중 2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음.
- 조사 결과를 보면, 웹툰작가들은 하루 평균 9.9시간, 마감 전날의 경우 하루 평균 11.8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5.7일,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51시간에 달했음. 설문에 참여한 웹툰작가 10명 중 6명(64.4%)은 ‘근무 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음. 10명 중 3명꼴로 육체적 지침(29.4%)과 정신적 지침(31.6%)이 ‘항상 있다’고 했음.
- 웹툰 플랫폼 기업과 작가들은 불평등한 계약 관계라 ‘비밀유지 조항’ 등 기업이 제시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며,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작가들은 평균 68.3컷을 요구받는데, 절반가량의 작가들은 휴재가 불가능(47.1%)하고 연재 주기 조정도 불가능(67.4%)하다고 답했음.
- 고강도·장시간 노동과 ‘실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 탓에 웹툰작가들의 건강권 침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 문제가 있지만 참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0.7%에 달했음. 우울증(28.7%)과 불면증(28.2%)을 경험한 작가들도 상당수였음.
- 응답자의 17.3%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8.5%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다’고 답했음.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비율도 4%였음.

◆ 교육부, 14개 교육청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발표

- 3월 14일 교육부는 2022년 서울·경기·충북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의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2만 4,065명 중 139명이 '폐암 의심', '폐암 매우 의심'이었고, 추가 검사에서 31명(0.13%)이 확진됐다고 밝혔음.
- 31명 외에도 14개 교육청에서 지난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 급식 종사자는 29명이나 됨.
- 교육부가 이 60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5년 급식 종사자의 폐암 유병률은 10만 명당 135.1명임. 국가 암 등록 통계상 45~64세 여성의 폐암 유병률(122.3명)보다 10.5% 높음.
- 서울·경기·충북교육청은 오는 5월까지 검진을 완료할 계획이라 폐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근로복지공단의 2월 6일 집계에서는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급식 종사자가 90명이었음. 이 중 65명은 산재가 인정됐고, 16명은 심사가 진행 중임. 8명은 불승인, 1명은 반려됐음.
-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발병의 1차 원인으로는 튀김, 볶음, 구이 요리 시 나오는 '조리 흡(COF)'이 꼽힘. 고온의 기름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연기와 함께 폐로 들어가 암을 일으키는 것임.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추진

- 2월 16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아이돌봄서비스란 아동의 집에서 1: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임.
- 여가부는 "출·퇴근 시간대 등 시설 돌봄의 틈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맞벌이 가구 등은 전액 자부담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되고 있지 않아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 여가부는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음.
-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범죄경력이나 건강 등)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함.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하기로 했음.
- 마지막으로,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 및 근로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음.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돌봄수당 지급 등을 검토할 예정임.

◆ 고용부 “207개 노조에 시정 기간 내에 장부 안 내면 과태료”

- 2월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음.
- 과태료를 부과해도 회계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였음.
- 이 장관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의 조합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였음.
-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회계 관련 서류 열람권 보장·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음.

◆ 정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개편 방안’ 확정

- 2월 2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현행법상 노조는 물론 법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사협의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올해 지원 예산은 44억 원임.
- 우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음.
- 정부는 올해부터 노사협의회 등 기타 노동단체 등을 보조금 지원이 집중되는 노동단체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음.
- 이번 조치는 노조가 주로 대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조직돼 비정규직과 사무직으로 구성된 MZ노조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임.

◆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1년간 면허 정지

- 3월 3일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를 받거나 작업을 전면 거부할 경우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 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조종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구분했음.
-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함. 1차 위반을 할 경우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임.

◆ 방역조치 완화 뒤 플랫폼 노동자 실질수입 되레 '감소'

- 2월 19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전 4개 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은 299만 5,000원이었으나, 해제 이후에는 344만 2,000원으로 14.9% 증가했음.
- 총수입 증가로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상승 등으로 플랫폼노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많이 증가했음.
- 2021년 월 평균 비용은 69만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16만 원으로 68.1%나 증가했음. 식비(81%), 유류비(89.6%), 대출상환금(43.3%)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음.
- 월 평균 비용을 제외한 플랫폼 노동자의 실질 수입은 2021년 월 평균 230만 6,000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16만 7,000원으로 되레 줄었음.
- 시간당 임금은 음식배달 노동자 1만 1,000원, 대리운전 노동자 1만 원, 가사노동자 8,700원, 택시노동자 8,100원이고 이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9,900원이었음.
- 음식배달 노동자 200명, 대리운전 노동자 200명, 택시노동자 100명, 가사노동자 100명 등 총 600명의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음.
-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전(2021년 10~12월)과 이후(2022년 6~8월)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 보기 위해 2022년 9월 대면조사를 했음.

〈표 5〉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후 과업별 보수 및 총수입

	건별 평균 보수액(원)		월평균 총수입(만 원)		
	거리두기 해제 이전	거리두기 해제 이후	거리두기 해제 이전	거리두기 해제 이후	증감률 (%)
전 체	16,715	18,030	299.5	344.2	14.9
음식배달	3,777	3,985	370.4	408.3	10.2
대리운전	23,005	24,718	257.8	324.7	26.0
택시	8,976	9,806	308.5	354.5	14.9
가사	43,970	41,055	232.0	244.6	5.5

자료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